

표창규정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규칙 제9장 제21~23조의 시행을 위하여 한국조명·전기설비학회 조명 및 전기설비의 학술 및 기술에 관하여 뛰어난 업적을 이루도록 가치를 포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학회상) 본 학회의 공로상, 학술상, 논문상, 학술대회 발표상, 기술상, 특별상, 우수졸업생 표창으로 한다.

제3조(공로상) 본 학회의 정회원 및 특별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조명 및 전기설비 학술 및 산업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
2. 본 학회의 발전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자

제4조(학술상)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 및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술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
2. 학회지 및 저서를 통하여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학술보급과 계몽에 현저한 업적이 있는 자

제5조(논문상) 본 학회의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우수한 논문의 저자
2. 논문은 전년도 총회개최 다음 월호부터 당해년도 총회 전 월호까지 본 학회지의 논문지에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한다.

제6조(학술대회발표상) 본 학회 정회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.

1. 춘·추계 학술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등에서 발표한 원고
2. 수상자 선정은 대회시 좌장회의에서 선정한다.
3. 수상은 정기총회시 수여하되, 추계와 총회를 동시 개최시는 추후 개별로 상장을 송부 한다.

제7조(기술상) 본 학회의 특별회원 및 신기술·우수제품 전시회 참여업체 중에서 조명 및 전기설비에 관한 제품, 설비 및 방식 등을 새롭게 완성하거나, 개량하여 현저한 결과를 나타낸 업체에게 수여한다.

제8조(특별상) 기부자의 출연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조명·전기설비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한 자에게 표창하며, 상의종류 및 상금 등은 별도의 특별상 수여 규정에 따른다.

제9조(우수졸업생 표창) 국내 대학(교)의 본 학회 관련학과 우수졸업(예정)자에 대한 장려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할 수 있다.

1. 학과(부)장이 추천한 자로서 해당 지회장이 재청 한 자를 학회 상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한다. 다만, 지회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지회장 재청은 본회 임원으로 한다.
2. 수상자 수는 해당 지회별로 전년도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1/100 이내로 하되, 최소 인원은 1인으로 한다.
3. 수상자에게는 학회장 표창장 및 부상으로 해당년도 학회 가입비 및 연회비를 면제하여 준다.

제10조(수상의 제한) 과거의 수상자는 동일 종류의 상에 대하여 해당 연도를 포함하여 5년(학술상 7년) 이내에는 재수상 할 수 없다.

1. 이 규정은 1987년 04월 08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1996년 10월 0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
3. 이 규정은 2014년 09월 03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(8조, 10조)
4.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0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. (9조)